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32 발의연월일: 2021. 7. 5.

발 의 자 : 허은아 · 권영세 · 김승수

황보승희 · 김 웅 · 신원식

金炳旭・류호정・하태경

한무경 · 성일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에 서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만을 규율하므로 국내 인터넷게임 제 공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의미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게임을 그 자체로 독성을 띤 유해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최근 중요한 산업 및 문화 콘텐츠로 부상한 게임의 인식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최근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임이용자들도 수면시간과 게임이용시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됨.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여 효과가 미미한 법률을 정비하고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게임 산업·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 제목, 제25조제1항제2호, 제26조 삭제 및 제59조제5호 삭제 등).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과몰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 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 용시간 등의 제한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각각 "과몰입"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절차"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u>과</u>몰 예방 입 예방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 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 지 의무) ① -----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 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 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의 제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 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 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 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 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 저 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 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세27조(인터넷게임 <u>과몰입</u>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과몰입

② (생 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 략)
-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

 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 6. ~ 9.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9. (현행과 같음)